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7호, 2016. 12. 29)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75호, 2019. 12. 5.)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좌동>	
	<신설>				(2) 용역수행 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현행					개정 (안)					비고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활용 실적	[3]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활용 실적	[3]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부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하나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활용 실적	[3]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활용 실적	[3]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부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하나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